# - 2025년 세종 SW융합클러스터2.0(특화산업 강화)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시업 모집 공고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 특화산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내 ICT/SW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03.

세종테크노파크원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SW융합을 통한 특화산업 동반 성장 기반 마련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반 SW융합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新비즈니스 발굴 및 국내 유망 ICT/SW기업 육성
- (사업내용)
  -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과제 지원
  - 세종시 및 관내·외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비즈니스 영역 확장 및 신시장 창출 조성

주관기업 + n ··· (세종 지역) + (세종 또는 그 외 지역) = 디지털 콘텐츠 기반 SW융합 제품·서비스 보유 데이터, 기술, 인프라, 네트워크 활용 개발 및 상용화

# 2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 (지원분야)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분야

####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분야

- (산 업 명) 디지털 콘텐츠
- (디지털 콘텐츠 정의)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
- (산업범위) ①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②AI 기반 라이프콘텐츠, ③산업콘텐츠(실 감·XR·디지털트윈), ④융합웹툰
- **(산업기술)** 메타버스, AI, IoT, MR/XR, AR/VR, 오감미디어콘텐츠, 홀로그래픽콘텐츠, 웹기반 콘텐츠 플랫폼, 게임, 현실가상융합콘텐츠, 암호화 기법 등
- (지원규모) 총 7개 과제 내외(과제당 1.0억원 X 1년)
  - 지원과제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SW융합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상용화** 지원
  - 지원기간 : 2025. 4. ~ 2025. 11.(8개월)
- (지원금 편성방법) 총 사업비의 민간부담금 25% 이상 의무 매칭
  - 총 시업비(100%) = 정부지원금(총 사업비의 75% 이하)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5% 이상)
  - \* 민간부담금 25% 중 현금비율 10% 이상 의무 편성, 현물은 인건비만 편성 가능

(예시)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25%)		
(100%)	(75%)	현금(30%)	현물(70%)	
133,335	100,000	10,000	23,335	

○ (지원조건) 협약기간 내 제품 개발, 기능 개선, 신시장·서비스창출 등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매출 실적 필수)

## 3 지원자격

### ○ (지원자격)

- 세종지역 소재 디지털 콘텐츠(별첨 1 참조) 관련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필수 참여(참여기업은 지역제한 없음)
- ▶ 본 사업은 지역 기업의 제품 상용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주관기업 예산 비중 50% 이상 필수)
- 참여기관 수는 최대 2개까지 구성하여 신청 가능
-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u>세종지역 내 위치</u> 해야 함 (본사, 지사, 연구소 등 과제 선정시, 과제수행 종료 후 2년간 세종시 유지)
- ※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내 **디지털 콘텐츠 분야 업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 세종테크노파크 입주기업도 지원가능하나, 신청시 입주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선정될 시, 세종시로 이전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 (지원제외 대상) 아래 내용 해당 시 지원 불가(주관/참여기관 공통)
  -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중복성 검토 및 제재정보 확인 필요
    - 일부 중복 내용일 경우 해당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원가능
  - ▷ 접수일 기준 각종 보고서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미납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관(업)
  -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가결산 포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선정된 경우, 발견 즉시 신청·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조치

# 4 평가절차 및 기준

- **(1단계) 적합성 검토**(점검자: 세종테크노파크)
  - 제출서류, 지원자격, 지원제외 대상, 경영상태, 중복성 검토, 우대사항 등 확인
  - ※ 필요시 서류 확인을 위한 사업장 현장 점검 수행 및 본사가 세종지역에 위치한 경우, 2단계 평가시 가점 부여
- **(2단계) 발표평가**(평가자: 외부 평가위원)
  - 평가일정 : 2025. 4. 8(화) ~ 4. 9(수) 예정 ※ 세부일정은 차후 안내
  - 평가방법 : 발표평가(기업당 30분씩/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기준 : 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
  -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점)		
타당성	사업	- 제품개발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명확성·실현가능성	20		
(35점)	추진계획 타당성	- 지역 특화산업(디지털 콘텐츠)와의 연관성	15		
기술성 (15점)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 기업 안정성(재무, 인력 등) 및 보유기술·제품 수준 - 개발기술·제품(서비스)의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	5		
		-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적 연계성 - 총괄책임자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조직구성 등 적절성	5		
		- 과제 신청금액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5		
	상용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 사업화 및 상용화를 통한 시장개척 가능성	20		
사업성 (50점)		- 신규고용 및 매출실적·성장 가능성	20		
(30 🗗)		- 지원과 연계한 지역사회 성장 기여 가능성	10		
우대사항 (2점)	· · · · · · · · · · · · · · · · · · ·		2		
	합계 102				

## ○ (기타사항)

- 평가시 발표는 과제 주관기업 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함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 예산 등을 심의·조정 후 최종 선정
- 선정 취소·포기 과제 발생시, 70점 이상인 차순위 과제순으로 선정
- 증빙되지 않는 내용은 불인정되며, 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5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일정 및 지원금(비율, 지급시기)은 내부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 6 의무 및 유의사항

○ (의무사항) 모든 실적은 협약기간 내 발생한 건만 인정

순번	내용
1	<ul><li>개발제품 상용화 및 매출 발생</li><li>수행기간 내 개발제품 상용화를 통한 매출 실적 발생 필수</li><li>매출 실적 증빙 제출 필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제품명 명시)</li></ul>
2	○ <b>과제별 신규인력 채용</b> - 협약기간 중 주관기업 내 신규직원 고용 필수(기업당 2명 이상) - 인력채용 증빙 제출 필수(4대보험 가입자명부)
3	○ <b>규제개혁 어드바이저 활동 참여</b> - 세종TP에서 지원하는 규제개선 활동(컨설팅, 기술자문) 참여 필수
4	○ 비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별첨 2 참조)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로 구성 - SW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는 최대 30% 이내로 구성 -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PC 및 장비 사용시 임차료로 편성하여 사용) -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위탁정산 수수료 편성 필수 * 사업비 정산은 별도 회계법인 지정 예정
5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과제 선정기업 대상  - 사업비 선지급을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기업 자부담 / 보험기간: 협약일~'26. 5. 31 까지)  - 사업운영을 위한 전용계좌 신규 개설 필수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지원기업에서 납부
6	<ul><li>○ 사업수행 결과물 제출 ※ 과제 선정기업 대상</li><li>- 결과보고서, 실적 증빙서류, 사업비 정산서류 등 기관 요구자료 제출 필수</li></ul>

# ○ (유의사항)

순번	내용
1	- 사업 수행 중 수행계획의 변경(참여연구원, 사업비 등)이 필요한 경우 협약변경 신청 필수 ※ [변경신청] 지원기업 → [변경승인] 세종TP → [승인통보] 세종TP
2	- 사업 수행 내용(추진일정 대비 실적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현황 등) 정기 진도점검 실시
3	- 사업 수행 중 해당기업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최종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회계정산 시 집행금액 불인정 등 <b>사업비 환수 조치</b> 될 수 있음

# 7 접수 및 문의처

- (공고게시)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사업·지원-사업공고'(www.sjtp.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3. 13.(목) ~ 3. 31(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SEMS(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을 통한 제출
  - ※ 공고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완료 과제만 인정. 접수 완료 후, 유선 확인(누락 시 신청자 책임)

홈페이지 (www.sjtp.or.kr) → SEMS '바로가기' (우측 상단) → 회원 가입 → '공고&접수' 메뉴(세종TP 지원사업) → 사업공고 제출서류 제출 → 접수 완료

○ (제출서류) 서류 날인 스캔본 및 문서 원본 업로드

번	호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대상	부수	비고
	1	- 사업계획서	필수	주관	1부	붙임1
	2	- 수행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붙임2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붙임3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주관, 참여	1부	붙임4
	5	- 기업 정보 현황	필수	주관, 참여	1부	붙임5
신 청 시	6	- <b>유사과제 검색결과서 1부</b>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http://ntis.go.kr)의 R&D관리시스템에서 중복성 검토 결과서 출력	필수	주관	1부	-
	7	- 발표자료(PPT 또는 PDF)	필수	주관	1부	-
	8	- 사업자등록증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
	9	- 최근 3개년(22~24년) 재무제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
	10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해당시	주관, 참여	각 1부	-
	11	- 세종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선정 확인서	해당시	주관, 참여	각 1부	-
	12	- 현금 및 현물 출자(납입) 확약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붙임6
선 정	13	- 신규인력 채용 확약서	필수	주관	1부	붙임7
성 후	14	- 사업장 유지 확약서	필수	주관	1부	붙임8
•	15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 제출증빙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 (문 의 처)

▶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SW산업팀 전지영 전임연구원

- tel : 044-850-3825 - e-mail: viki2141@sjtp.or.kr

▶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SW산업팀 엄지혜 연구원

- tel: 044-850-3839 - e-mail: ejh2024@sjtp.or.kr

# 별첨 1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 KSIC 코드

# ○ 디지털콘텐츠 관련분야 KSIC 코드(사업계획서 내 기재 필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에 따른 업종범위 >					
1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6	26329	기타주변기기제조업	
2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7	26410	유선통신장비제조업	
3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38	26422	이동전화기제조업	
4	33402	영상게임기제조업	39	26511	텔레비전제조업	
5	59112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40	26519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6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41	26521	라디오,녹음및재생기기제조업	
7	26529	기타음향기기제조업	42	26600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8	63991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43	27111	방사선장치제조업	
9	58219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44	27112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10	27322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45	27302	사진기,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	
11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46	28114	에너지저장장치제조업	
12	26421	방송장비제조업	47	28123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13	85709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48	28901	전기경보및신호장치제조업	
14	73909	그외기타분류안된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9	28903	교통신호장치제조업	
15	62090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50	29180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16	26111	메모리용전자집적회로제조업	51	29222	디지털적층성형기계제조업	
17	26112	비메모리용및기타전자집적회로제조업	52	29271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18	26121	발광다이오드제조업	53	29272	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제조업	
19	26129	기타반도체소자제조업	54	29280	산업용로봇제조업	
20	26211	액정표시장치제조업	55	30332	자동차용신품전기장치제조업	
21	26212	유기발광표시장치제조업	56	31311	유인항공기,항공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22	26219	기타표시장치제조업	57	31312	무인항공기및무인비행장치제조업	
23	26221	인쇄회로기판용적층판제조업	58	47912	전자상거래소매업	
24	26222	경성인쇄회로기판제조업	59	61210	유선통신업	
25	26223	연성및기타인쇄회로기판제조업	60	61220	무선및위성통신업	
26	26224	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61	61291	통신재판매업	
27	26291	전자축전기제조업	62	61299	그외기타전기통신업	
28	26292	전자저항기제조업	63	58211	유선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29	26293	전자카드제조업	64	58212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0	26294	전자코일,변성기및기타전자유도자제조업	65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31	26295	전자감지장치제조업	66	62022	컴퓨터시설관리업	
32	26310	컴퓨터제조업	67	63111	자료처리업	
33	26321	기억장치제조업	68	63112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34	26322	컴퓨터모니터제조업	69	63120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35	26323	컴퓨터프린터제조업	70	63999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 별첨 2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 본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 필요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정규직 역	인력에 대한 인건비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구 분	세 부 내 용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 _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① 성과상여금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
		연봉제	② 연가보상비	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적용기관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현금 산정불가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
			① 봉급(기본급여)	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
	보수	연봉제	· ③ 중국무중(기국무중 중)   · · · · · · · · · · · · · · · · · ·	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미적용기관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② 4대법청(근미여근 건강법청 고유법청 시제법청)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성(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	
		,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
인건비			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구 분	세 부 내 용	등은 현금 산정불가
		1 6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① 성과상여금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연봉제	② 연가보상비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
		적용기관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
			① 봉급(기본급여)	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상용	연봉제	④ 초과근무수당	
	00 임금	미적용기관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성(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또하다는 저애스다오 체다기과이 버스근저게 H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식십식으도 관련 없는 애고급역, 당메되식구당과 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돈의 기록	교의 70 676 위표에서 시골한 한산비는 현경 출기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
		인건비	만 산정
	일용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
	임금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대한 절감하여 산정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 펌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따른 대가 및 사례금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금전 또는 간식비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
			물의 제작비
			· 현수막·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b>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b> >
	일반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운영비	수용비		및 자문료
	' ' '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ul> <li><b>공고료 및 광고료 &gt;</b></li> <li>· TV ·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li> </ul>
			고 망고료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비목 세	작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공유 및 제/		사업비 규모 변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6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0천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500천원  • 3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600천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600천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600천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600천원  • 10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800천원  • 10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800천원  • 30억원 이상 2,100천원  <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1개 기관 추가시  2개 이상 표준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을 참고  ○ 우편요금·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합
투 <del>;</del> 매식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 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
		임차료 및 이용료	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
			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
			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
			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임차료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
			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
			확안 작성 세부지침, '정보화사업' 부문
			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
			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
			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
		則	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재료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 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
			비유지비로 산정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กม		해당 기준 적용 가능
	시설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
	장비 유지비		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11/17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 방시설, 및 연료구입
			당시설, 및 전묘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
			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b>川</b> 목	일반 용역비	<ul> <li>적용대상</li> <li>○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li> <li>-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li> <li>-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li> <li>○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li> <li>○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li> </ul>	산정 기순 및 세무 내용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계약절차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 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중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국내 여비	<ul> <li>○ 근무지 내 출장</li> <li>-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li> <li>○ 근무지 외 출장</li> <li>-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li> <li>○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li> </ul>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여비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영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ul> <li>○ 회의비(식대성 경비)</li> <li>○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li> <li>○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li> <li>○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li> </ul>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 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ul> <li>○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li> <li>-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li> <li>○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li> <li>- 기술용역 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및 「측량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li> <li>-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li> <li>- 기타연구용역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 정부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li> <li>※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li> </ul>